

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의자 : 안도걸 · 정준호 · 임호선  
전용기 · 이용선 · 정태호  
조계원 · 복기왕 · 정진욱  
최혁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「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」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.

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·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·재정·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,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5548호) 및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

(의안번호 제155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”을 “한국방송공사 사장 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 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